

사적 미디어로서의 유튜브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삭제에 관한 논의*

노 현 숙**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조교수

■ 국문 초록

유튜브는 이용자 누구나 소비자이자 생산자가 되어 직접 원하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게시하거나 감상할 수 있는 인터넷개인방송이다. 유튜브 공간은 공적 공간, 사적 공간, 이용자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다. 공적 공간 및 사적 공간으로서의 유튜브 공간에서는 콘텐츠가 공개되기 때문에 자유로운 표현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관련이 깊다. 국내외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에 의하여 유튜브 콘텐츠가 삭제되는 사례들이 있고 유튜브 콘텐츠의 삭제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검열은 헌법상 검열과 사적 검열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헌법상 검열에서 문제가 되지만 사적 검열에서도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유튜브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이나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콘텐츠를 삭제하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유튜브 플랫폼이 콘텐츠를 삭제하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 유튜브 플랫폼의 자체적인 목적에 의하여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라도 유튜브의 삭제 기준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된다.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기 전에 이용자는 유튜브 정책에 동의한 후 이용하는데, 유튜브를 이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동의인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인다. 유튜브는 자유

* 논문을 심사해주시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sunnylaw@gmail.com

로운 참여 및 자유로운 표현에 의한 다양한 콘텐츠를 특징으로 하는 만큼 유튜브 콘텐츠에 대하여 유튜브 플랫폼에 의하여 규제하기보다 이용자 스스로 자신이 창작한 콘텐츠를 검토하는 자율적인 필터링을 활성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튜브 플랫폼에 의하여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에 유튜브 플랫폼이 어떠한 기준을 적용하고 콘텐츠의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음을 유튜브 채널 측에 명확하게 통지하고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삭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용자는 콘텐츠 삭제 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유튜브 플랫폼의 삭제 기준을 고려하여 향후 콘텐츠를 창작하고 업로드함으로써 콘텐츠의 창작 단계에서부터 자율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유튜브,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공적 공간, 사적 공간, 자신만의 공간, 유튜브의 불투명성, 이용자의 자율 필터링

목 차

- I. 들어가는 말
- II. 유튜브 플랫폼의 의의
 - 1. 유튜브의 개념
 - 2. 유튜브 콘텐츠의 양상
 - 3. 유튜브 공간의 성격
 - 4. 소결
- III. 유튜브상 표현의 자유와 국내외 법
 - 1. 유튜브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 2. 국내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
- IV. 유튜브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
 - 1. 헌법상 검열
 - 2. 사적 검열
 - 3. 유튜브 플랫폼의 사적 검열
- V. 유튜브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 사례 검토 및 제언
 - 1. 국내외 콘텐츠 삭제 사례 검토
 - 2. 비판 및 제언 - 콘텐츠 삭제의 투명화 및 이용자 자율 필터링
- VI. 마무리하며

I. 들어가는 말

국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7년 이후 약 95%에 이르고 있으며¹⁾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²⁾ 휴대전화로서의 사용 목적 외에도 일, 가사, 여가, 학업, 생활편의 등 다양한

1) 한국갤럽 (2021). 2012-2021 스마트폰 사용률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 URL: file:///C:/Users/aaa/Downloads/GallupReport(20210608)_%EC%8A%A4%EB%A7%88%ED%8A%B8%ED%8F%B0.pdf

2) 스마트폰 작동이 일상에서 가장 우선되는 활동이 되고 스마트폰의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며 이로 인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겪는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까지 드물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URL: file:///C:/Users/aaa/Downloads/2020%20%EC%8A%A4%EB%A7%88%ED%8A%B8%ED%8F%B0%EA%B3%BC%EC%9D%98%EC%A1%B4%EC%8B%A4%ED%83%9C%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pdf

영역의³⁾ 동영상 시청에 스마트폰이 활용되는 가운데 유튜브(YouTube)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동영상 플랫폼의 하나이다. 유튜브 플랫폼의 자유로운 접근성 및 다양한 이용자에 의한 콘텐츠의 업로드는 유튜브의 가장 큰 장점의 하나이다. 이러한 자유로운 방식은 유튜브 콘텐츠의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통제되지 않는 표현의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유튜브 콘텐츠가 급증하고 유튜브 이용의 확산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비방이나 타인을 침해하는 유튜브 콘텐츠도 증가하고 있다. 불건전한 콘텐츠나 공개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혐오 표현⁴⁾을 사용하거나 자극적인 콘텐츠 또는 제목으로 조회수를 늘리는 등, 과연 자유로운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하는 콘텐츠도 발견된다. 그러한 콘텐츠를 접하는 이용자들은, 유튜브 플랫폼이 어떠한 표현도 허용되는 자유로운 공간인지, 아니면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public) 공간으로서 표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도 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유튜브 플랫폼은 이용자의 자유와 자율을 특징으로 하지만, 유튜브 커뮤니티가 재미있고 즐거운 공간으로 유지되고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인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⁵⁾를 제시한다. 유튜브

3) 대학생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의 구성은 여가 목적을 위한 사용이 35.36%,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사용이 33.60%, 일, 학업, 가사 목적의 사용이 17.18%, 생활편의를 위한 사용이 12.57%로 나타났다. 오송석·정현용 (2021). COVID-19 이후 대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6권 4호, 756.

4) 혐오 표현은 혐의의 차별적 표현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서보건 (2020).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차별적 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21권 2호, 198.

5) 스톱 및 현혹 행위(사기, 현혹, 스톱, 사취하려는 등의 의도가 있는 콘텐츠), 민감한 콘텐츠(과도한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아동 보호와 관련한 콘텐츠, 성행위와 과도한 노출, 자살이나 자해 등에 관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협한 콘텐츠(유해하거나 위협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폭력 범죄 조직에 관한 콘텐츠, 증오심을 표현하거나 약탈적 행위, 괴롭힘이나 사이버 폭력과 관련한 콘텐츠, 폭력 묘사, 악의적 공격, 유해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조장하는 등의 콘텐츠), 유튜브상 판매가 규제된 상품(불법 상품이나 규제 상품이나 총기 등과 관련한 콘텐츠), 잘못된 정보에 관한 콘텐츠(유해한 치료제나 치료법의 홍보 콘텐츠, 기술적으로 조작된 콘

플랫폼에 업로드된 콘텐츠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의 삭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콘텐츠가 삭제되기도 한다. 유튜브 플랫폼에 의하여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문제 될 여지도 있지만, 유튜브 플랫폼이 사적 미디어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한다. 오늘날 소통이 중요한 화두인 가운데 표현의 자유는 자유로운 소통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유튜브상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소통의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유튜브 콘텐츠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살펴보고 어떠한 방향을 지향할 것인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유튜브의 개념과 유튜브 콘텐츠 양상 및 유튜브 공간의 성격을 살펴보고, 유튜브상의 표현의 자유의 개념과 국내외 관련 법을 살펴본다. 검열의 의미를 유튜브 콘텐츠 삭제와 관련하여 점검해보고, 국내외 유튜브 콘텐츠 삭제 사례를 검토해보며, 유튜브 콘텐츠의 자율성을 보호할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튜브 플랫폼의 의의

1. 유튜브의 개념

가. 유튜브

오늘날 개별화된 매체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인 시청각 매체의 하나인 티비(TV)를 통한 콘텐츠 이용률보다 유튜브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접근이 증가하고 있다.⁶⁾ 유튜브는 2005년에 처음 등장하였

텐츠, 코로나19에 관한 잘못된 의료 정보, 잘못된 백신 정보,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는 콘텐츠 등 오해의 소지나 사기성 정보로 심각한 위험이 있는 콘텐츠) 등이 라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유튜브에 신고하면 유튜브가 검토하여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6) 매체 이용시간을 보면 TV 시청시간이 하루 평균 2시간 42분으로 가장 많았으나

고 이후 구글이 2006년에 매입한⁷⁾ 구글 소유의 유한 책임 회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수익성 있는 세계 최대의 플랫폼의 하나이다. 유튜브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창작하고 업로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용자는 유튜브 플랫폼상에서 콘텐츠를 창작하고 업로드한다.

유튜브는 인터넷개인방송에 해당하고, 인터넷개인방송은 1인 또는 복수의 사람이 정보통신망⁸⁾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의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 또는 VOD(주문형 비디오, Video on Demand) 방식으로 제공한다.⁹⁾ 국내의 대표적인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와 함께 글로벌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인 유튜브는 대표적인 인터넷개인방송의 하나이다.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개인방송은 방송법상의 방송¹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방송법에 따라 규율되지 않는다. 유튜브 콘텐츠는 정보통신 콘텐츠에 해당하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르는 심의가 적용된다. 유튜브 영상이 정보통신 콘텐츠에 해당하고 방송법의 규율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오늘날 유튜브 플랫폼은 폭넓은 언론매체로 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 반면,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1시간 39분으로 매년 늘고 있다. 매체를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비율로 본 매체 이용 빈도는 스마트폰이 87.3%로 가장 높았고, TV는 75.0%로 이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한국기자협회 (2020. 1. 20). URL: http://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204

- 7) 2005년 2월에 채드 메레디스 헐리(Chad Meredith Hurley), 스티브 천(Steve Chen), 자베드 카림(Jawed Karim)이 공동으로 유튜브를 설립하고 2005년 4월 23일에 최초의 영상인 “Me at the zoo”를 업로드하면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006년 10월에 구글에 매각하였다.
- 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다.
- 9)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2조 제1호
- 10)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의 종류로는 사물의 정지 또는 이동하는 영상과 음성, 음향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텔레비전방송, 음성, 음향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라디오방송, 데이터를 위주로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으로 된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데이터방송,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채널을 통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이 있다.

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율하는 언론의 자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이용자가 생산자가 되어 직접 원하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업로드하며 누구나 해당 채널에 들어와서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즐길 수 있다. 또한, 유튜브는 스트리밍 중에 댓글창을 통해 진행자 또는 창작자와 이용자 간에, 또는 감상자 또는 이용자들 상호 간에 실시간 채팅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한 다각적인 시청각 플랫폼이다. 유튜브 공간은 사실상 진입장벽이 거의 없고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무형식 소통의 장(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용자들 간의 유연성 있는 실시간 쌍방향 소통은 오늘날 휴대폰 문화 및 생활방식에 익숙한 현대인의 즉각적인 의사소통 및 표현 방식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인다.

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크리에이터(YouTube creator) 또는 유튜버(youtuber)라는 용어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창작하고 업로드하는 창작이용자 또는 유튜브 영상 중에서 콘텐츠를 진행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직접 창작하고 제작을 담당할 수도 있고 단순히 영상의 진행만을 담당하기도 한다. 유튜브가 처음 등장하였을 때에는 개인적인 영상들에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유튜브의 영상 제작 또한 기존의 방송 제작 매체와 마찬가지로 고도화되고 체계화되어 유튜브 콘텐츠를 업으로 제작하는 회사들도 등장하였다. 유튜브는 개인적이고 비상업적인 플랫폼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공중을 대상으로 공지사항을 게시하는 유튜브나 상업적 유튜브가 함께 공존한다. 이에 따라 유튜브를 사적 공간으로 이용하는 유튜버도 있고 유튜버를 업으로 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도 있다.

2. 유튜브 콘텐츠의 양상

유튜브 플랫폼은 구글이 제공하더라도 각각의 콘텐츠는 유튜버가 창작하고 업로드하므로 콘텐츠의 내용은 유튜버나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의해 결정되고 해당 채널의 유튜버나 콘텐츠 제작자에 의한 자유로운 구성이 가능하다. 폭넓은 이용자가 자유롭게 접근하여 유튜브를 활용하는 가운데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의 시청은 유튜브 플랫폼이 이용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유튜브 플랫폼에서 다양한 이용자가 콘텐츠를 창작하고 업로드하므로 기존의 정형화된 콘텐츠의 범위나 제한된 내용과는 달리 생활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는 수많은 정보 및 다양한 콘텐츠가 계속 업로드되고 있다. 기존의 매체에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전문인들에 의한 선별된 영상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유튜브 플랫폼 상에서는 모든 영역의 다양한 소재와 주제의 콘텐츠들이 업로드된다. 따라서,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콘텐츠의 형식이 자유롭고 소재와 내용이 다양하며 콘텐츠마다 신선한 재미를 준다. 유튜브 콘텐츠가 기존의 방송인들에 의한 콘텐츠보다는 다듬어지지 않고 어설픈 내용도 있지만, 오히려 꾸밈이 없는 듯한 표현이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다가오기도 한다.

기존의 매체들을 통해 등장하는 출연자는 소수의 방송인이나 연예인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비방송인이나 비연예인들도 자신의 콘텐츠를 가지고 자유롭게 등장한다. 음식을 먹으며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먹방 영상, 일반인이 요리하는 영상,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이 수험공부를 하는 시간 내내 아무 대화 없이 계속되는 영상 등 유튜브 이용자들은 유튜브 콘텐츠 상의 일반인 출연자를 보며 정보를 얻거나 대리만족을 하기도 한다. 또는 출연자와 시청자가 댓글을 통해 소통하고 시청자가 유튜브 진행자에게 선물이나 현금을 보내기도 하는 등 기존의 티비 등에서의 진행의 틀을 벗어난 자유롭고 편안한 양식의 콘텐츠가 넘쳐나게 되었다.

유튜브 콘텐츠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이나 유선 티비 방송 등에 적용되는 규칙의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개인 간 소통하는 수준에서의 자유로운 콘텐츠가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되기도 한다. 자유롭고 다양한 유튜브 콘텐츠 중에는 비속어나 모욕의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고 공격적인 내용을 직설적으로 발언하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유튜버가 ‘이 채널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공간이므로 자신의 콘텐츠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용자에게 나가라고 하거나 이용자를 차단’하기도 한다. 자신의 유튜브 공간에서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어떠한 발언이나 행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공간에서 자유로이 콘텐츠를 업로드하거나 자유로운 표현을 할 수 있다.

3. 유튜브 공간의 성격

가. 공적 공간과 표현의 자유

유튜브는 사적, 개인적인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공간에서 비롯되었으나 유튜브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유튜브 플랫폼이 사회적 발표의 장이 되기도 하고 공식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튜브가 이용되기도 한다. 유튜브는 개인적인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콘텐츠에 이용자들이 접근하여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등 다수의 대중이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유튜브 콘텐츠는 닫힌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대중에게 열린 공간에 존재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게 공개된 공적인(public)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유튜브 콘텐츠가 다수에 의하여 아직 접근되지 않은 상태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되어 있고 언제라도 접근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공적 공간으로 볼 수 있다.¹¹⁾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논란은 이러한 공적 공간에서 가장

11) 대중에게 공개된 의미로서의 공적 공간을 의미한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유튜브상 표현이 제한되는 대상은 주로 공적 공간에서의 유튜브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공적 공간에 업로드된 콘텐츠는 다수의 대중에게 접근되고 공유될 수 있으므로 이 공간에서의 콘텐츠에 나타난 표현은 유튜브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삭제의 주요한 대상이다. 따라서 주로 공적 공간으로서의 유튜브 플랫폼에 업로드되는 콘텐츠와 관련하여 언론 탄압이나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제기된다.

나. 사적 공간과 표현의 자유

유튜브 콘텐츠의 소재나 내용은 유튜버와 이용자의 자유로운 표현에 따라 구성되므로 콘텐츠의 창작에서부터 사적(private) 성격을 가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유튜브의 사적 성격은 유튜브의 고유한 성격이고 유튜브 플랫폼이 이용자의 자유로운 콘텐츠를 게시하는 장(場)이라는 점에서 유튜브는 태생적으로 사적 성격을 가지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적 공간은 대중적 공간으로서의 공적 공간에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다른 이용자들이 유튜브 콘텐츠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튜브 채널이 유튜브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기 전의 상태에서 해당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경우이다. 이 공간에서는 특별히 대중을 염두에 두어 유튜브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으므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 하지만 언제라도 다른 이용자가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고 유튜브 채널이 알려지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공간에서의 콘텐츠의 표현은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지만 언제라도 많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 자신만의 공간과 표현의 자유

이용자가 외부와 차단된 자신만의(own, secret) 공간으로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의 독점 공간에서 이용자는 유튜브 플랫폼을 자신의 비망록과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다. 유튜브 콘텐츠를 비공개로 설정할 경우 유튜브 계정의 소유자는 해당 채널의 콘텐츠에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공간은 대중과 분리된 오롯이 자신만의 공간으로서 유지될 수 있으며 비공개로 설정된 콘텐츠라도 유튜브 계정의 소유자는 언제라도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독점적 공간이다. 이 공간에서 계정의 소유자는 타인의 접근을 고려할 필요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콘텐츠를 창작하고 업로드할 수 있다. 자신만의 공간에 업로드된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항에 의해서도 제한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으며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도 표현이 제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만의 독점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타인과 공유되지 않는 혼자만의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이라는 점에서 내심의 자유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심의 자유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내심의 자유는 내면의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고 자신만의 공간에서의 표현은 내심의 자유 또는 내면의 자유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만의 독점 공간에서의 표현은 누구의 제한이나 무엇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내심과 내면 그대로의 표현이 보장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독점 공간에 업로드된 콘텐츠는 유튜브 플랫폼에 의한 삭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적지만 유튜브 플랫폼에 의한 검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자신만의 공간에 업로드된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것으로 보인다.

4. 소결

유튜브는 누구나 스트리밍이나 업로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유로운 사적 공간이고 동시에 자신만의 공간이 될 수 있으며, 누구나 유튜브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고 유튜브 콘텐츠가 공중에게 공개되어있다는 점에서 공공의 공적 공간이기도 하다. 유튜브 콘텐츠 게시자가 콘텐츠를 비공개로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를 의도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해당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따라서 업로드된 콘텐츠에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언제라도 접근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공개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유튜브 플랫폼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게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것은 유튜브 플랫폼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플랫폼으로 성장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다. 유튜브 플랫폼의 성장에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유로운 콘텐츠와 표현이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때때로 유튜브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되거나 삭제되기도 한다. 다음에서는 유튜브상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의 개념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각국의 관련 법을 살펴해보도록 한다.

Ⅲ. 유튜브상 표현의 자유와 국내외 법

1. 유튜브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가. 표현의 자유

유튜브 플랫폼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문제는 유튜브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쟁점의 하나이다. 표현의 자유란 추상적 용어로 생각하고 생각한

것을 전달하고 의사소통하는 인간이 가지는 대표적인 능력이다.¹²⁾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호되는 법익은 일차적으로 자유로운 의견¹³⁾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인간은 언론 및 표현의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가 서로 뒤바뀌기도 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문화에 참여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영향을 미친다.¹⁵⁾ 생각하고 의사소통하는 인간의 능력에 기반한 표현하는 자유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것을 전제로 하고¹⁶⁾ 사고와 견해의 자유로운 표명과 전달을 의미한다.¹⁷⁾ 종전에 언론의 자유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를 가리키는 측면이 강하였으나, 인터넷상에서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언론의 자유나 개인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다.¹⁸⁾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더욱 조명을 받고 있고 표현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남용이 심각한 문제화 되기도 한다.¹⁹⁾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는 절대적인 자유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적 방법으로 진지하게 고려된 사상의 표출을 보호하는 것이며²⁰⁾ 헌법

12) Thomas I. Emerson (1963).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Yale Law Journal* 72, 879.

13) 사상이나 의견의 가치에 관한 평가는 자유로운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노동일, 정완 (2012).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網)중립성원칙; 새로운 개념정립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47권 4호, 386.

14) 권형돈 (2020).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51호, 8. 예를 들어, 혐오 표현은 법적 규제대상이 아니지만 단순한 불쾌감 또는 무례함 넘어서는 경우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방지될 수만은 없고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박승호 (2019).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31권 3호, 65.

15) Jack M. Balkin (2004). *Digital speech and democratic culture: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formation society*,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9, 4.

16) 서보건 (2011).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유럽헌법연구>, 10호, 322.

17) 서보건 (2020). 앞의 논문, 199.

18) 성낙인 (2009).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법>, 8권 1호, 104.

19) 성낙인 (2009). 위의 논문.

20) 장용근 (2009).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세계헌법연구>, 15권 3호, 375.

37조 2항의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 사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핵심적인 주제로 대두되면서 인터넷을 누구도 제한해서는 아니되는 정보의 장으로 볼 것인지 일정한 법과 원칙으로써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인지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²¹⁾ 인터넷의 전파성이 크므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²²⁾ 인터넷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에 중점을 두어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²³⁾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시장 또는 매체라고 확인하면서, 인터넷은 낮은 진입장벽을 가지고, 쌍방향성 표현이 보장되며,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을 필요로하므로, 규제만을 강조하여 표현의 자유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규제의 수단 또한 헌법 내에서 다채롭게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여 인터넷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²⁴⁾

인터넷은 접근의 용이성, 다양성, 개방성, 상호작용성, 탈중앙통제성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자유 사상의 시장의 개념에 가장 가까운 매체이다.²⁵⁾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능동적이고 의도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쌍방향적 의사 표현이 보장되므로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를 판단함에서도 이러한 인터넷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²⁶⁾ 인터넷상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은 현실 공간에서의 표현이 가지는 물리적인 한계를 초월하고 그 전파력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인터넷상

21) 성낙인 (2009). 앞의 논문, 100-101.

22) 성중탁 (2016). 최근 미국의 사내(社內) 소셜 미디어 정책 관련 법제 동향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9권 4호, 58.

23) 조소영 (2012).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행위의 헌법적 보호 범위에 관한 검토. <헌법판례연구>, 13권, 227.

24)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결정.

25)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191(병합) 결정.

26) 김경호 (2014).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판결에 나타난 특성 연구. <언론과 법>, 13권 2호, 183.

표현은 현실 공간에서의 표현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인다.²⁷⁾ 자유로운 의견의 표현과 함께 표현된 의견이 상대방이나 공중에게 전달되어야 표현의 자유의 의미가 있으므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실현에서 중요하다.²⁸⁾ 유튜브 연결을 위한 원활한 전파나 네트워크는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유튜브 콘텐츠 시청 중 버퍼링(buffering)이 발생하여 시청을 방해하기도 하는데, 버퍼링은 단순히 네트워크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콘텐츠의 제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한다.

티비나 라디오 등의 전통적인 언론매체는 언론형성의 문지기과 같은 역할을 했고 그 영향력이 축소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그 영향력은 엄청나며²⁹⁾ 인터넷의 등장은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된 획기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³⁰⁾ 유튜브의 등장은 전통매체와 인터넷의 등장에 비견되는 소통 방식의 분기점이라고 보인다. 기존의 방송 양식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시청자가 분리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유튜브 플랫폼의 등장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또는 이용자가 혼재하고 역할이 겹치기도 하며 쌍방향의 소통이 확산하게 되었다. 매체의 성격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법리를 유튜브에 적용하면, 매체로서의 유튜브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유튜브상 허용되는 표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인다. 인터넷에 기반한 유튜브 플랫폼은 자유로운 표현을 표출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기에 유튜브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유튜브는 기존의 매체보다 더 개방성이 강조되므로 타의에 의한 규제

27) 정완 (2009).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저스티스>, 통권 109호, 11.

28) 유일상·유계환 (2011). 표현과 소통으로서의 인터넷 댓글과 그 책임에 관한 일 고찰. <언론과 법>, 10권 2호, 309.

29) Jerome A. Barron (2007). Access to the media—A contemporary appraisal, *Hofstra Law Review* 35, 945.

30) 이재진 (200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비교법제적 연구. <한국방송학회>, 15권 2호, 303.

는 한계가 있고 콘텐츠 창작자의 자율규제가 필요하며, 표현의 자유가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³¹⁾

나. 알 권리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의 헌법 제21조의 언론의 자유에는 표현의 자유와 함께 알 권리 및 매체의 자유도 큰 비중을 갖는다.³²⁾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균형추와 같은 상대적인 개념이다.³³⁾ 알 권리의 개념은 벤담(Bentham)과 밀(Mill)의 공리적 자유주의 개념과 루소(Rousseau)의 공공의 복리(*le bien commun*)에 개념에서 도출되는 공익의 개념에서 비롯되었고³⁴⁾ 인터넷의 발달로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되었다.³⁵⁾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다른 측면으로서, 자유롭게 표현된 것에 사람들이 접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알 권리는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의 다른 측면이라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알 권리는 알고 싶은 권리라기보다는 알아야 하는 사항을 아는 권리이고, 인격권에 관한 불필요한 내용에 집중함으로써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알지 못함으로써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³⁶⁾

알 권리에 의하여 얻어지는 정보는 의사를 형성³⁷⁾하기 위한 전제조건

31) 지성우 (2012). SMART미디어시대 인터넷콘텐츠 심의의 규범적 문제점과 법제정 비방안. <성균관법학>, 24권 3호, 278.

32) 차진아 (2012). 표현의 자유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3권 3호 (통권 73호), 8.

33) Barron, *supra* note 29, at 945.

34) 이재진 (2005). 저널리즘 영역에 있어서의 알권리의 기원과 개념변화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권 1호, 239-240.

35) Barron, *supra* note 29, at 951.

36) 심미선 (2020).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6권 2호, 33.

37) 대중은 토론의 내용을 들을 권리를 가질 뿐만 아니라 토론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Columbia Broad. Sys., Inc. v. Democratic Nat'l Comm.*, 412 U.S. 94, 193

이며 민주주의에서의 핵심적인 가치이다.³⁸⁾ 헌법재판소는 알 권리를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기본권으로 확인하였다.³⁹⁾ 오늘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중요한 문제로서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없음이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선택이나 의견의 표현을 결정한다. 따라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와 항상 결부되어 다루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제1항)에 근거한다고 보인다. 알 권리의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질서유지나 공공복리 등의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알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지만⁴⁰⁾ 최소한으로만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⁴¹⁾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는 오늘날 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권, 즉 액세스권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

가. 유럽연합의 표현의 자유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⁴²⁾에서는 모든 사람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다.⁴³⁾

(1973).

38) 이상학 (2014). 알 권리로서 정보자유 의 쟁점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7집 3호, 93.

39)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결정.

40)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1 결정;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바107 결정.

41) 김현수 (2014). 소셜미디어 문화의 형성과 표현의 자유. <법학논고>, 46집, 155.

42)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2010 O.J. (C83) 389. Proclaimed by the Commission, 7 December 2000.

43)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Article 11, 1.

이때의 표현의 자유에는 공권력의 간섭을 받거나 국경의 제한 없이 의견을 주장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권리를 포함하고, 매체의 자유와 다원화를 인정한다.⁴⁴⁾ 다양한 매체의 하나인 유튜브 플랫폼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은 유튜브가 도입되기 전에 제정되었음에도 다원화된 매체를 인정하고 매체의 자유로운 확장을 인정함으로써 오늘날 유튜브 콘텐츠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나. 미국의 표현의 자유

미국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예외로 간주하는 만큼⁴⁵⁾ 표현의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⁴⁶⁾ 특히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때에도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⁴⁷⁾ 한편, 인터넷의 등장으로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의 표현의 자유의 확대가 기대되었으나 오히려 표현의 가치가 침식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⁴⁸⁾ 수정헌법 제1조는 표현의 주체를 막론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의사 표현의 행위라면 보호될 수 있다고

44)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Article 11, 2.

45) 윤명선 (2003).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장소. <미국헌법연구>, 14호, 2.

46)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안 즉, 적법한 표현과 불법한 표현의 선별에 섬세하고 복잡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책임을 과도하게 부과하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책임의 부과를 완화하는 편인 반면, 객관적인 침해의 판단이 가능한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서는 보다 큰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향선 (2009).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 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타당성에 관하여. <언론과 법>, 8권 1호, 188-189.

47) 이형석·김정기 (2019). 언론과 인터넷상 사적사실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35권 1호, 172.

48) 김성진 (2014).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미국법을 중심으로. <법률실무연구>, 2권 2호, 31.

보며⁴⁹⁾ 인간이 자유로운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근간으로 하지만, 초기에는 국가가 언론 통제 권한을 행사하기도 하였다.⁵⁰⁾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앞서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서 인정되지만, 표현의 자유도 이익형량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공익적 요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 표현의 자유의 상대성을 인정한다.⁵¹⁾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폭력적 반응을 유발하는 투쟁적 표현이나 협박, 아동 외설, 명예훼손, 서비스 또는 상품에 관한 허위의 표현, 성차별을 유발하는 표현 등의 자유는 허용되지 않지만, 수정헌법 제1조는 정부에 대한 반대의견이나 대중적이지 아니한 의견을 억제할 수 없도록 하여 반정부적인 의견이나 반대중적인 의견의 표현을 보호하는 등 다양성을 보호하고 있다.⁵²⁾ 따라서, 유튜브상의 표현과 관련하여, 폭력적이거나 다른 사람을 침해하거나 허위의 유튜브 콘텐츠는 제한될 수 있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정부에 반대되는 유튜브 콘텐츠나 대중에 대항하는 유튜브 콘텐츠는 제한될 수 없다.

다. 한국의 표현의 자유

헌법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언론, 출판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언론, 출판의 자유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언론 및 출판과 집회 및 결사는 개인과 집단에 모두 적용되지만, 언론이나 출판의 자유는 좀 더 개인의 표현의 자유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의 성격이 강하다.⁵³⁾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의사 표현에 간섭하지 않아야 하

49) 조소영 (2020). 주식회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7권 1호, 23.

50) Dawn C. Nunziato (2005). The death of the public forum in cyberspac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20, 1145.

51) 장용근 (2009). 앞의 논문, 375-377.

52) 장용근 (2009). 위의 논문, 374-375.

고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위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개인적 권리의 지위를 가진다.⁵⁴⁾ 언론의 자유는 언론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는 자기실현의 수단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존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 의사결정에 참여를 실현하는 수단이다.⁵⁵⁾ 따라서, 유튜브 콘텐츠를 통한 자기실현과 소통 및 정치 참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지만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기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 및 사회적 중요한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표현과 다른 사람의 권리 사이의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 영역 내에서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즉, 유튜브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은 다른 사람의 명예나 공중도덕 및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비방이나 공격 등 다른 사람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 및 도덕이나 미풍양속 등 보편적인 윤리에 위배되는 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범위를 두고 있는 반면,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다른 어떤 가치보다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시각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다음에서는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열의 개념을 유튜브 콘텐츠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실제 유튜브 콘텐츠 삭제 사례를 통해 유튜브 콘텐츠 삭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53) 성낙인 (2009). 앞의 논문, 100; 박승호 (2013). 표현의 자유와 공적광장이론 -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41집, 288. 표현의 자유는 자신의 사상, 생각, 의견 등을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이고, 개인적 측면의 표현의 자유로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들 수 있고, 집단적 측면의 표현의 자유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의미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54) 유일상·유계환 (2011). 앞의 논문, 309.

55) 김현수 (2014). 앞의 논문, 155.

IV. 유튜브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

1. 헌법상 검열

검열은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 검열 및 사후 검열, 사인에 의한 사전 검열 및 사후 검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⁶⁾ 헌법상 검열은 행정권이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의 발표 전에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내용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⁵⁷⁾ 행정기관에 의한 콘텐츠 검열과 관련하여, 국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기본권에 위반되며⁵⁸⁾ 사전 검열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사후 검열만 허용된다.⁵⁹⁾ 표현의 자유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규제로부터 숨통이 트여 숨 쉴 공간을 필요로 하기때문에 제한된 영역에 대해서만 규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⁶⁰⁾ 검열금지원칙에 의하면 표현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검열금지의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가는 표현의 자유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⁶¹⁾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의 원칙이란 모든 형태의 사전적 제한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표현의 발표 여부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요건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 제

56) 황성기 (2011).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17권 3호, 166.

57) 헌법재판소 1996. 10. 4. 93헌가13, 91헌바10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0. 31. 94헌가6 결정.

58) 국가에 의한 표현의 심사는 사적 검열보다 더 위험하고 국가관이 표현물의 내용을 심사하고 자유로운 비판이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결정;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 결정.

59) 황성기 (2011). 앞의 논문, 168.

60) *N.A.A.C.P. v. Button*, 371 U.S. 415, 433 (1963).

61) 권형돈 (2006).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비교고찰. <중앙법학>, 8집 2호, 3.

출의 의무, 행정권 주체의 사전심사절차, 허가받지 않은 의사 표현의 금지, 심사 절차를 관철하는 강제수단'을 검열의 요건으로서 제시하고,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헌법상 검열에 해당한다고 본다.⁶²⁾

2. 사적 검열

사적 주체에 의한 콘텐츠의 제한이나 사적 검열은 사적 주체의 자체적인 검열을 의미한다. 사적 검열은 사인 또는 제3의 사적 주체에 의한 검열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⁶³⁾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괴롭힘이나 협박을 방지하거나 범죄와 관련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검열을 들 수 있다. 해당 플랫폼에 대한 해킹(hacking) 또는 피싱(phishing) 등에 의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열을 하기도 하고, 플랫폼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확대하고 광고수익을 높이기 위해 검열을 하거나, 해당 사이트의 상업적 이익과 충돌되는 내용을 차단하기도 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사적 검열을 하는 주요한 이유의 하나는 해당 플랫폼의 시장성을 강화하고 플랫폼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⁶⁴⁾ 이 경우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라고 하더라도 플랫폼의 상업적 이익을 고려하여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⁶⁵⁾

사적 검열이 사적 주체의 자체적인 검열을 의미하지만, 사적 검열도 내부적 검열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검열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⁶⁾ 사적 검열이 사적 주체가 아닌 외부적 검열의 요인에서 출발하고 단지 콘텐츠

62) 헌법재판소 1996. 10. 4. 93헌가13 결정;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가9 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4헌가8 결정; 헌법재판소 2008. 6. 26. 2005헌마506 결정;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5헌바75 결정.

63) 황성기 (2011). 앞의 논문, 170.

64) 최규환 (2020).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공법학연구>, 21권 2호, 240.

65) Benjamin F. Jackson (2014). Censorship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age of facebook, *New Mexico Law Review* 44, 127-131.

66) *Id.* at 129-231.

츠 사업자나 플랫폼을 매개로 한 것이라면 엄밀하게 사적 검열이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⁶⁷⁾ 표현의 자유의 침해 문제는 행정기관에 의한 헌법상 검열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지만, 사적 주체에 의한 콘텐츠 검열이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의 일부로 기능하거나, 사적 검열이 강화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우려도 있다.⁶⁸⁾ 또한, 행정기관이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과잉규제의 가능성도 있다.⁶⁹⁾ 플랫폼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검열을 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대상을 검열의 대상에 포함하거나 필요한 항목보다 더 광범위한 사항을 검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 검열이 자체적인 검열이든지 사적 미디어를 매개로 한 행정기관의 간접적 검열이든지 사적 검열 또한 행정기관의 직접적 검열 못지않게 위험하다.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의 경우 완전히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알 권리가 점차 강조되면서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는 반면, 사적 검열의 경우 콘텐츠의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검열 과정이 불투명하며 검열이 행해지는 것조차 이용자가 인식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⁷⁰⁾ 따라서,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가 콘텐츠를 제한하는 범위가 넓을수록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⁷¹⁾ 다음에서는 유튜

67) 조항제 (2017). 언론 통제와 자기 검열. <언론정보연구>, 54권 3호, 55.

68) 김현귀 (2016).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의 구조에서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언론과 법>, 15권 3호, 230.

69) 정찬모 (2016). 인터넷 플랫폼의 중립성 규제:인터넷아키텍처에 입각한 경쟁정책과 기본권의 조화.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73호, 153.

70) Marjorie Heins (2013). The brave new world of social media censorship, *Harvard Law Review Forum* 127, 326. 검색 엔진의 경우 이용자는 검색 엔진이 제공하는 검색 결과에 기초하여 표현의 자유를 향유하지만, 제공된 정보가 어떻게 선별되는지 알 수 없다.

진보나 중도 성향의 사람들보다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유튜브상 정보 규제에 더욱 반대하는 경향이 있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할수록 유튜브상 정보 규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가 있다. 함민정·이상우 (2020).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2호, 46.

71) 조재현, 지성우 (2013).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공동체 자율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61집, 198.

브 플랫폼에서의 사적 검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3. 유튜브 플랫폼의 사적 검열

유튜브 콘텐츠는 자유와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지만, 유튜브 콘텐츠와 유튜브 및 이용자 등 전체 유튜브 커뮤니티를 쾌적한 공간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튜브 플랫폼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제시한다. 유튜브 플랫폼은 콘텐츠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신고되어야 하는 콘텐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콘텐츠를 삭제한다. 매 순간 수많은 콘텐츠가 대량으로 게시되는 가운데 유튜브 콘텐츠의 삭제를 위해서 인력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에 의하여 일정한 패턴이 감지된 콘텐츠가 삭제되기도 한다.⁷²⁾ 또한, 유튜브가 제시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신고하면 유튜브는 신고된 콘텐츠를 검토하여 삭제하기도 한다.⁷³⁾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유튜브 플랫폼은 세계 각지의 인력을 통해 해당 콘텐츠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였는지를 검토하여 위반한 경우 콘텐츠를 삭제한다.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받아들여지면 삭제된 콘텐츠가 복구되기도 한다. 이의제기는 1회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2주일마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주일 후에 다시 이의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콘텐츠 삭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유튜브 측으로부터 콘텐츠가 유튜브 가이드를 위반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는다고 하여도 2주 후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위반이 아니라고 판

72) 인공지능이 콘텐츠의 패턴을 감지하여 종전에 삭제되었던 콘텐츠와 유사한 콘텐츠를 감지하여 콘텐츠를 삭제하고 조회 수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일정한 패턴이라고 감지된 콘텐츠가 삭제되기도 한다.

73)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는 콘텐츠라면 삭제에서 제외되고 이러한 예외적 상황은 교육(E), 다큐멘터리(D), 과학(S), 예술(A) 등의 콘텐츠에 해당한다.

단되면 삭제되었던 콘텐츠가 복구되기도 한다.⁷⁴⁾

콘텐츠와 관련한 신고는 개인이 신고 또는 삭제를 요청하기도 하지만 행정기관이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한다. 즉, 유튜브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한 경우가 아닌 다른 주체가 유튜브 플랫폼에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도 유튜브 플랫폼이 직접 콘텐츠를 삭제하므로 표면적으로는 유튜브에 의한 삭제라고 인식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면에는 행정기관이나 개인 등 제3자의 요청에 의한 삭제인 경우도 있다. 모든 콘텐츠의 삭제가 반드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한 콘텐츠 삭제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콘텐츠 삭제는 표면적으로는 유튜브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삭제이지만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유튜브를 매개로 하여 사실상 행정기관에 의한 콘텐츠 삭제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민간 플랫폼인 유튜브가 자체적으로 콘텐츠의 표현을 감지하여 자체 가이드에 위반되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유튜브를 포함하여 인터넷 환경에 대한 행정기관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특히 행정기관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따라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정부의 정책을 각국 유튜브 콘텐츠 삭제 기준에 반영하도록 압박할 경우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하여 행정기관이 유튜브 이용자에게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콘텐츠의 삭제가 유튜브 자체적인 가이드에 의한 콘텐츠 삭제인지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한 삭제인지를 구별하거나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기관이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경우라도 그러한 압력이 있었다고 확인되기는 어렵고 유튜브가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입장을 가이드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기관의 무언의 압력이 있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의 제한이

74)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의 위반으로 판단된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 엄밀히는 삭제가 아니라 플랫폼상에서 이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 장소는 재산으로서의 개념을 가지고⁷⁵⁾ 전통적인 거리나 광장에서 언론을 표출하였을 때 그러한 장소가 국가의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소유한 장소에서 언론을 배제하거나 화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인터넷상의 공간이나 유튜브 플랫폼에 적용하여 보면, 행정기관이 플랫폼을 통제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검열하는 경우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 플랫폼은 민간기업의 플랫폼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유튜브에 대하여 검열을 요구할 수 없으나 상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행정기관의 콘텐츠 삭제 요청이 받아들여진다고 보인다.

유튜브의 콘텐츠 삭제가 유튜브 자체적인 가이드의 위반을 이유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유튜브의 정책에 동의한 이용자들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것이므로 유튜브의 정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이용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유튜브 플랫폼을 선택하고 가입한 것이므로 민간 플랫폼인 유튜브가 자체적인 가이드에 위반되는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유튜브 플랫폼의 정책에 동의하여 유튜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운데에 상당수의 이용자는 유튜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고, 불가피하게 유튜브 정책에 동의하고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형식상으로는 이용자가 유튜브 정책에 동의하고 유튜브를 이용하게 되지만 유튜브 플랫폼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동의하는 경우이거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플랫폼이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와 교류할 수 있는 유튜

75) Timothy Zick (2006). Space, place, and speech: The expressive topography,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4, 444.

브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이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유튜브 플랫폼상에서 활동해야만 친구나 업무 등의 오프라인 활동이나 교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유튜브의 가이드에 의한 유튜브 플랫폼의 자체적인 콘텐츠 삭제라도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보인다. 따라서 자유로운 표현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하고 계속 유튜브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선택적으로 유튜브에서 탈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라면 유튜브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삭제는 사실상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적용하여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 명확하게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기준에 위반되는지 이용자가 확인하기도 어렵다. 유튜브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와 관련한 불투명성의 문제는 유튜브 플랫폼에 의한 콘텐츠 삭제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임을 확인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보인다.

V. 유튜브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 사례 검토 및 제언

1. 국내외 콘텐츠 삭제 사례 검토

가. 프레저 대학 v. 구글 사건⁷⁶⁾

프레저 대학(Prager University; PragerU)은 유튜브상에 게시한 콘텐츠를 유튜브 및 유튜브의 모기업인 구글이 프레저 대학의 콘텐츠를 규제한 것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프레저 대학은 13-15세 연령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 종교 및 최근 사건들에 관한 교육 영상을 배포하여 토론을 촉진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이다. 프레저 대학의 영

⁷⁶⁾ *Prager University v. Google*, 951 F.3d 991 (9th Cir. 2020).

상 콘텐츠는 보수적 견해의 학자, 자료, 기타 유명 연사들을 묘사하는 영상들이다. 프레저 대학의 콘텐츠는 연령 제한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유튜브는 프레저 대학의 콘텐츠를 검열하였다. 2016년 6월에 프레저 대학은 유튜브가 프레저 대학의 콘텐츠에 이용자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유튜브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유튜브는 프레저 대학의 영상들에 이용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합리적이거나 일관성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016년까지 프레저 대학의 영상이 최소한 16건 제한되었고 2017년까지 총 21건의 영상이 제한되었다.

프레저 대학은 유튜브가, 콘텐츠를 불법으로 검열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프레저 대학은 유튜브가 콘텐츠 영상을 규제하고 필터링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조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레저 대학은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에 동참하기 위해 유튜브를 이용하라고 대중을 초대하고 유튜브 관련자 스스로 유튜브를 자유로운 언론을 위한 공적 포럼이라고 일컫는다는 점을 들어 유튜브가 공적 포럼이고 따라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유튜브가 공적 포럼인지 아닌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유튜브가 이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공적인 장(public forum)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유튜브가 민간기업(private company)이므로 민간기업이 콘텐츠를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헌법의 제1조(First Amendment)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유튜브는 사적 플랫폼이므로 기업의 자체적인 정책에 의하여 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업의 정책에 동의하는 이용자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유튜브 플랫폼은 프레저 대학의 콘텐츠를 제한한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된

다고 보인다. 유튜브 플랫폼의 이용자는 플랫폼의 정책에 동의하여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튜브 플랫폼이 자체적인 정책에 의하여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유튜브 플랫폼의 정책이나 기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거나 이용자가 유튜브 정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용자가 유튜브 플랫폼의 검열 기준과 세부적인 사항을 미리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용자는 플랫폼의 기준에 최대한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하고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유튜브 삭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러시아의 콘텐츠 삭제 사례⁷⁷⁾

2021년 5월 6일 유튜브는 러시아의 언론기관에 관한 연방 집행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 RKN)⁷⁸⁾의 요청에 따라, 언론사인 소타 비전(Sota Vision)과 노바야 가제타(Новая Газета; Novaya Gazeta), 야당 정치인 일리야 야신(Илья Яшин; Ilya Yashin)의 유튜브 채널 등 여러 대중매체의 영상에서 스마트보트(SmartVote)의 하이퍼링크를 삭제하였다.⁷⁹⁾ 스마트보트는 유튜브 관리자

77) Article 19 (2021. 5. 7). Russia: YouTube must do more to protect free speech. <Article 19>. URL: <https://www.article19.org/resources/russia-youtube-must-protect-free-speech/>

78) 로스콤나드조르(ф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и)는 통신, 정보기술 및 대중매체 감독을 위한 연방 기관이다. URL: https://eng.rkn.gov.ru/about/statute_of_roskomnadzor/?utm_source=google.com&utm_medium=organic&utm_campaign=google.com&utm_referrer=google.com

79) 수감된 러시아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 Alexei Navalny)가 고안한 스마트 투표 앱은 의회 및 지방 선거에서 여당의 득표를 견제하기 위한 투표 전략이었다. 이 앱은 선거 시작일에 애플과 구글 스토어에서 삭제되었고 러시아 당국은 애플과 구글에 대하여 해당 앱의 삭제를 거부하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하였다. 450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이 선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통합당의 승리가 예상되었으며 14개 정당이

로부터 스마트보트의 하이퍼링크는 ‘스팸, 사기 행위 및 사기 정책’에 관한 유튜브의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였고 업로드 및 콘텐츠에 관하여 추가로 불만이 제기되면 앞으로 이와 같은 동일한 삭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알림을 받았다. 또한, 노바야 가제타는 일주일간 모든 콘텐츠의 업로드가 금지된다는 알림을 받았다.

이러한 유튜브의 조치가 언론에 공개된 후 몇 시간 후에 유튜브는 노바야 가제타, 소타 비전 및 일리야 야신에 대한 영상의 삭제 및 링크 차단은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고 삭제된 콘텐츠 및 링크가 복원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튜브가 러시아 내에서 업로드된 콘텐츠를 부당하게 삭제한 것은 처음이 아니며 유튜브 플랫폼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유튜브가 러시아 당국과 협력하여 러시아 당국에 반대되는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고, 유튜브의 삭제 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 사안과 관련된 유튜브 채널들은 구독자가 많고 인기 있는 채널들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삭제된 콘텐츠가 복원되었으나, 구독자 수가 적은 소규모 채널의 경우에는 복원조치나 어떠한 해명도 없이 방치되기도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사건에서 유튜브 플랫폼은 러시아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함으로써 러시아 행정기관의 검열 매개체로서 기능하였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유튜브 플랫폼이 콘텐츠를 삭제하였으나 사실상 해당 삭제의 주체는 행정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검열은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할 것이다. 즉, 플랫폼이 행정기관의 검열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투표에 참여하였던 반면, 나발니 당과 관련된 후보자들은 출마할 수 없었다. 한편, 당국에 의한 제한 조치에 대하여 러시아 청년들이 항의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자 이러한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으면 대형 소셜 미디어 회사들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당국이 밝혔다. BBC news (2021. 9. 17). Russian election: Opposition smart app removed as vote begins. <BBC news>. URL: <https://www.bbc.com/news/world-europe-58593940>

다. 국내의 삭제 사례⁸⁰⁾

유튜브 채널 ‘의학채널 비온뒤’는 해당 채널에 “코로나 백신 1부 더 이상 전염을 막지는 못한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였다. 2022년 1월 6일에 해당 채널의 담당자는 해당 영상이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되었다고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밝혔다. 채널 담당자는 해당 영상이 ‘잘못된 의료 정보’로 분류되어 유튜브에서 강제 삭제되었음을 밝혔고 유튜브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 영상을 다시 게재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이후 해당 채널에서 영상이 복원되어 다시 공개되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한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은 해당 콘텐츠가 환경일심장내과 전문의의 강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과 이은혜 순천향대병원 교수가 질병청 정보 가운데에서 유용하여 발췌한 데이터를 받아 다시 쉽게 정리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두 정보를 통합해서 볼 때 ‘작금의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무리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느껴져’ 영상을 준비했다고 밝히면서, 유튜브 콘텐츠가 석연치 않은 사유로 강제 삭제된 것은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함익병은 댓글을 통해 유튜브에서 검열과 삭제가 일어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콘텐츠가 삭제되더라도 과도한 선정성이나 명백한 허위 내용 방송이라서 삭제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영상이 삭제된 것에 대하여, “탄압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유튜브 담당자의 해명대로 AI에서 인식한 자동 알고리즘 탓인지, 의도된 다수의 정보 왜곡으로 일한 결

80) 배재성 (2022. 1. 7.). 함익병 “언론탄압” 분노…돌연 삭제된 백신 영상 뒤길래.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969#home>
 김혜린 (2022. 1. 7.). 함익병 “유튜브,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 삭제 …언론 탄압”. <동아일보>. UR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07/111142802/2>
 문지연 (2022. 1. 7.). 함익병 “백신이 전염병 못 막는다는 영상, 유튜브서 삭제…언론탄압”.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G6ZEWNGILRBKRMYPMLHGVVZJ6GU/

과인지, 그 이상의 레벨에서 내려온 외압인지”, “어느 경우이든 콘텐츠의 삭제 행위는 구글의 사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이 사건은 유튜브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유튜브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의 기준 및 검열의 불투명성은 이용자로 하여금 유튜브 플랫폼의 검열 조치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인다. 이용자가 유튜브의 검열 조치에 수긍하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검열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유튜브의 불투명성은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인다.

2. 비판 및 제언 - 콘텐츠 삭제의 투명화 및 이용자 자율 필터링

행정기관의 삭제 요청에 따라 유튜브 플랫폼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유튜브 플랫폼에 의한 삭제의 형태이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 유튜브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형태의 콘텐츠 검열은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검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외 유튜브 콘텐츠 삭제 사례에서 보듯이 유튜브 플랫폼에 의하여 콘텐츠가 검열되고 삭제되는 사례의 상당 부분이 행정기관의 삭제 요청에 의한 것이다. 각국의 행정기관들은 유튜브 플랫폼상에 자국의 국민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측되는 콘텐츠나 자국어로 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유튜브 플랫폼은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왔다. 특히 한국의 행정기관에 의한 유튜브 콘텐츠 삭제 요청 횟수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횟수를 보여왔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의하면,⁸¹⁾ 2020년에 미국 행정기관이 9482건의 콘텐츠 삭제를 유튜브에

81) 구글 투명성 보고서. URL: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hl=ko>. 2010년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를 시작으로 여러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15년 1월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에 의한 콘텐츠 삭제 및 개인정보 요청 건수에 관한 통계를 제공하고, IT 기업들은 정부 규제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문제완 (2015). 인터넷상 사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43집 3호, 197.

요청하였고, 일본의 경우 1070건, 독일의 경우 1941건, 영국의 경우 829건, 프랑스의 경우 5475건의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였다. 같은 해 한국의 행정기관은 5만4330건의 유튜브 콘텐츠 삭제를 유튜브 플랫폼에 요청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삭제 요청보다 한국의 삭제 요청이 많았고, 이들 국가의 인구수와 한국의 인구수를 감안할 때 한국 행정기관들의 콘텐츠 삭제 요청은 다른 어느 국가의 경우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 내에서 유튜브 콘텐츠가 과도하게 검열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콘텐츠 삭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체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지만, 행정기관에 의한 유튜브 콘텐츠의 삭제 요청은 단순히 콘텐츠 삭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콘텐츠와 관련한 특정 정보를 숨기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고 해당 정보와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을 언론 또는 여론의 형성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유튜브 플랫폼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동시에 알 권리가 억제될 수 있다. 이로써 특정한 의도에 의하여 연출된 왜곡된 정보 및 언론 상황 등에 의하여 조성된 언론 환경에 대중들이 노출됨으로써 왜곡된 상황을 정확한 정보로 인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왜곡된 언론 환경을 기초로 대중이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있고 사회적인 차원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행정기관의 과도한 삭제 요청은 대중과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유튜브 플랫폼이 거부하기 쉽지 않을 수 있고, 불가피하게 콘텐츠 삭제가 필요하거나 정당하게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당성을 보호하고 삭제 요청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서, 행정기관이나 제3자가 유튜브 플랫폼에 대하여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 유튜브는 콘텐츠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등의 삭제 근거를 콘텐츠 삭제 처분을

받는 유튜브 채널에 통보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적으로도 게시하는 절차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구체적인 삭제 이유와 삭제가 필요했던 부분을 상세하게 특정함으로써 해당 콘텐츠를 업로드한 채널 측이나 업로더는 삭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유가 납득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 의한 삭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업로더의 의문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행정기관이나 제3자의 무차별적 콘텐츠 삭제 요청도 일부 지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유튜브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다. 콘텐츠가 삭제됨으로써 콘텐츠의 내용에 유튜브의 정책과 충돌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정황상 추측할 뿐이고 명확하게 어떤 점이 삭제의 원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도 삭제 조치된 콘텐츠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유튜브 채널 측에 상세하게 통보하고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삭제 처리를 투명하게 할 필요하다고 보인다. 요컨대 유튜브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경고의 표시를 받는 경우 어떠한 기준에 위배되고 콘텐츠의 어느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를 통지 및 공개적으로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향후 콘텐츠의 삭제 여부를 예상하고 콘텐츠가 보호될 것인지 삭제될 것인지를 안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삭제되는 콘텐츠가 유튜브 가이드나 행정기관의 삭제 요청 기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유튜브 이용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유튜브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이용자는 삭제의 기준을 좀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업로드하는 콘텐츠가 삭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인다. 이로써 콘텐츠가 삭제되기를 원하지 않는 업로더는 삭제 기준을 고려하여 한층 유튜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게 되고 콘텐츠 업로드 이전의 콘텐츠 창작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용자가 자율

적으로 콘텐츠의 내용에 관한 필터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핵심 사항은 아니지만, 일방적인 삭제로 인하여 콘텐츠가 제한되는 것보다는 유튜브의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콘텐츠의 자유로운 업로드와 이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의 제한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VI. 마무리하며

유튜브 플랫폼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이 누구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가 직접 생산자가 되어 원하는 콘텐츠를 창작하고 게시할 수 있으며 스스로 소비자가 되어 원하는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소비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콘텐츠를 감상하면서 댓글창을 통하여 이용자들 간에 채팅으로 의사소통을 하기도 하고,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쌍방향 소통을 하기도 하는 등 실시간의 즉각적인 쌍방향 소통은 오늘날 휴대폰의 즉각적인 방식에 익숙한 현대인의 의사소통 방식에도 부합한다. 유튜브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의 하나는 이용자가 유튜브 플랫폼상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창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용자들은 온갖 종류의 콘텐츠를 창작하고 업로드할 수 있으며 즉각적으로 다른 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다.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인 다양성과 무형식성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표현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유튜브 플랫폼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업로드된 콘텐츠를 삭제하기도 한다. 유튜브 공간은 공적 공간, 사적 공간, 이용자 자신만의 은밀한 공간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특히 공적 공간 및 사적 공간으로서의 유튜브 공간에서는 콘텐츠가 공개되기 때문에 무한정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튜브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해당하여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유튜브 콘텐츠는 사적 미디어인 유튜브 플랫폼에 의한 삭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유튜브 플랫폼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 유튜브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삭제하기도 하지만 행정기관의 요청에 부응하여 콘텐츠를 삭제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행정기관들은 유튜브 플랫폼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의 국내 행정기관에 의한 유튜브 콘텐츠 삭제는 과도하다고 보인다. 행정기관의 요청에 부응하여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 유튜브 플랫폼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형식을 취하지만 사실상 행정기관의 의사에 의한 콘텐츠 삭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때의 콘텐츠 삭제는 사적 검열이 아닌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의한 검열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있으며 유튜브 플랫폼을 간접적인 매개로 하여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유튜브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유튜브 플랫폼의 정책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유튜브 정책에 동의한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유튜브 플랫폼의 기준에 의하여 콘텐츠가 삭제되거나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콘텐츠가 삭제되는 경우 모두 삭제의 명확한 기준을 알 수 없고 어떠한 근거나 기준에 의하여 삭제되는지 투명하지 않다. 이용자는 삭제의 기준이나 삭제 콘텐츠의 선별과 관련한 투명한 기준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유튜브 플랫폼의 삭제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유튜브 플랫폼의 콘텐츠 삭제와 관련하여, 삭제되는 콘텐츠에서 문제가 되는 내용과 어떤 기준에 위배되는지를 명확하게 해당 유튜브 채널 측에 통보하고 공개적으로 그 기준을 게시함으로써 유튜브 콘텐츠 삭제와 관련한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유튜브 이용자가 유튜브 플랫폼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콘텐츠 창작의 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필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창작 콘텐츠

의 필터링과 자율규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튜브 플랫폼 삭제 기준의 투명한 공개가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유튜브 이용자의 자율적인 콘텐츠 필터링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권형돈 (2006).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에 대한 비교고찰. <중앙법학>, 8집 2호, 7-34.
- _____ (2020).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와 그 규제법리 -혐오표현·거짓정보에 대한 독일의 대응을 중심으로. <사법>, 통권 51호, 3-34.
- 김경호 (2014).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판결에 나타난 특성 연구. <언론과 법>, 13권 2호, 165-190.
- 김성진 (2014).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미국법을 중심으로. <법률실무연구>, 2권 2호, 29-52.
- 김현귀 (2016). 인터넷상 표현에 대한 법적 책임의 구조에서 다중채널네트워킹(MCN). <언론과 법>, 15권 3호, 227-250.
- 김현수 (2014). 소셜미디어 문화의 형성과 표현의 자유. <법학논고>, 46집, 147-164.
- 노동일·정완 (2012).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망(網)중립성원칙: 새로운 개념 정립을 위한 논의를 중심으로. <경희법학>, 47권 4호, 371-400.
- 문재완 (2015). 인터넷상 사적 검열과 표현의 자유. <공법연구>, 43집 3호, 181-206.
- 박승호 (2013). 표현의 자유와 공적광장이론 - 미연방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41집, 287-324.
- _____ (2019). 혐오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31권 3호, 45-88.
- 서보건 (2011).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 <유럽헌법연구>, 10호, 313-340.
- _____ (2020).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와 차별적 표현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21권 2호, 193-222.
- 성낙인 (2009).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언론과 법>, 8권 1호, 99-128.
- 성중탁 (2016). 최근 미국의 사내(社內) 소셜 미디어 정책 관련 법제 동향과 우리 법제에 대한 시사점. <아주법학> 9권 4호, 49-73.
- 심미선 (2020). 언론보도에서 알권리와 인격권 충돌에 관한 언론인 인식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6권 2호, 1-41.
- 오승석·정현용 (2021). COVID-19 이후 대학생의 스마트폰 이용실태 조사.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논문지>, 16권 4호, 753-763.

- 유일상·유계환 (2011). 표현과 소통으로서의 인터넷 댓글과 그 책임에 관한 일 고찰. <언론과 법>, 10권 2호, 309-313.
- 윤명선 (2003).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장소. <미국헌법연구>, 14호, 307-340.
- 이상학 (2014). 알 권리로서 정보자유와 쟁점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17집 3호, 91-124.
- 이재진 (2001).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비교법제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15권 2호, 303-342.
- _____ (2005). 저널리즘 영역에 있어서의 알권리의 기원과 개념변화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권 1호, 231-264.
- 이향선 (2009). 인터넷상의 표현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사이버모욕죄 도입과 허위사실유포죄 유지의 법리적 정책성 · 타당성에 관하여. <언론과 법>, 8권 1호, 171-203.
- 이형석·김정기 (2019). 언론과 인터넷상 사적사실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35권 1호, 171-194.
- 장용근 (2009).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세계헌법연구>, 15권 3호, 367-390.
- 정 완 (2009).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규제. <저스티스>, 통권 109호, 7-42.
- 정찬모 (2016). 인터넷 플랫폼의 중립성 규제:인터넷아키텍처에 입각한 경쟁정책과 기본권의 조화.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73호, 137-158.
- 조소영 (2012).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행위의 헌법적 보호 범위에 관한 검토. <헌법판례연구>, 13권, 221-256.
- _____ (2020). 주식회사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 기본권 주체성 여부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7권 1호, 3-26.
- 조재현·지성우 (2013).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과 공동체 자율규제에 관한 헌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61집, 179-206.
- 조항제 (2017). 언론 통제와 자기 검열. <언론정보연구>, 54권 3호, 41-72.
- 지성우 (2012). SMART미디어시대 인터넷콘텐츠 심의의 규범적 문제점과 법제정비방안. <성균관법학>, 24권 3호, 259-281.
- 차진아 (2012). 표현의 자유의 구조와 성격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53권 3호(통권 73호), 1-29.
- 최규환 (2020).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사적 검열. <공법학연구>, 21권 2호,

223-271.

함민정·이상우 (2020). 유튜브 정보 규제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권 2호, 36-50.

황성기 (2011). 사적 검열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세계헌법연구>, 17권 3호, 163-191.

김혜린 (2022. 1. 7). 함익병 “유튜브,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 삭제 … 언론 탄압”. <동아일보>. URL: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107/111142802/2>

문지연 (2022. 1. 7). 함익병 “백신이 전염병 못 막는다는 영상, 유튜브서 삭제… 언론탄압”. <조선일보>. URL: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1/07/G6ZEWNGILRBKRMYYMHLGVVZJ6GU/

배재성 (2022. 1. 7). 함익병 “언론탄압” 분노…돌연 삭제된 백신 영상 뒤길래. <중앙일보>. UR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8969#home>

한국기자협회 (2020. 1. 20). URL: http://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47204

구글 투명성 보고서. URL: <https://transparencyreport.google.com/?hl=k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20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URL : <file:///C:/Users/aaa/Downloads/2020%20%EC%8A%A4%EB%A7%88%ED%8A%B8%ED%8F%B0%EA%B3%BC%EC%9D%98%EC%A1%B4%EC%8B%A4%ED%83%9C%EC%A1%B0%EC%82%AC%20%EB%B3%B4%EA%B3%A0%EC%84%9C.pdf>

한국갤럽 (2021). 2012-2021 스마트폰 사용률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에 대한 조사. URL : [file:///C:/Users/aaa/Downloads/GallupReport\(20210608\)_%EC%8A%A4%EB%A7%88%ED%8A%B8%ED%8F%B0.pdf](file:///C:/Users/aaa/Downloads/GallupReport(20210608)_%EC%8A%A4%EB%A7%88%ED%8A%B8%ED%8F%B0.pdf)

Balkin, J. M. (2004). Digital speech and democratic culture: A theory of freedom of expression for the information society, *New York University Law Review* 79, 1-58.

Barron, J. A. (2007). Access to the media—A contemporary appraisal, *Hofstra Law Review* 35, 937-954.

- Emerson, T. I. (1963). Toward a general theory of the First Amendment, *Yale Law Journal* 72, 877-956.
- Heins, M. (2013). The brave new world of social media censorship, *Harvard Law Review Forum* 127, 325-330.
- Jackson, B. F. (2014). Censorship and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age of facebook, *New Mexico Law Review* 44, 121-167.
- Nunziato, D. C. (2005). The death of the public forum in cyberspace, *Berkeley Technology Law Journal* 20, 1145-1197.
- Zick, T. (2006). Space, place, and speech: The expressive topography, *George Washington Law Review* 74, 439-505.
- 로스컴나드조르(едеральная служба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Роскомнадзор). URL: https://eng.rkn.gov.ru/about/statute_of_roskomnadzor/?utm_source=google.com&utm_medium=organic&utm_campaign=google.com&utm_referrer=google.com
- Article 19 (2021. 5. 7). Russia: YouTube must do more to protect free speech. URL: <https://www.article19.org/resources/russia-youtube-must-protect-free-speech/>

■ ABSTRACT

Discussion on Content Deletion by YouTube Platform as a Private Media

Roh, Hyeon Sook
Assistant Professor, Konkuk University Glocal Campus

YouTube is an online personal broadcasting service with virtually no barriers to entry and allows users to become consumers and producers who create, post, and enjoy desired content. The YouTube spac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public, private, and the user's own secret spaces. As public and private spaces, where free expression could potentially be limited because of the content's publicized nature, the YouTube space is deeply related to issues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There are cases where YouTube content is deleted by YouTube platforms at home and abroad, and censorship or deletion of YouTube content can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know. Censorship is further classified into constitutional and private. In general,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are a problem in constitutional censorship, but there is room for issue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private censorship as well. YouTube may censor or delete content of its own volition or at the request of administrative agencies. Superficially, YouTube deletes content, but in truth, YouTube's censorship would constitute a restriction on freedom of expression if administrative agencies censor the content. Even when content is deleted for YouTube's own purposes, the opacity of YouTube's censorship standards could pose a problem.

Before using the YouTube platform, the user agrees to YouTube's policy. Such a policy potentially violates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this consent be obligatory (i.e., necessary to becoming a YouTube user). Because YouTube features various content by free participation and expression,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to activate the user's autonomous filtering rather than regulate each content on YouTube. When YouTube deletes content, it seems necessary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its censorship by clearly identifying and publicly explaining the YouTube standards being applied and what is being violated by the deleted content. Through transparent processes, users would better understand YouTube's content deletion criteria. Thus, it is expected that YouTube content can be filtered autonomously at the user level by creating and uploading filtered content in the future, considering these criteria.

Keywords: YouTube, freedom of expression, right to know, public space, private space, own (secret) space, YouTube's opacity, user's autonomous filtering

[논문투고일 2022. 3. 12. 논문수정일 2022. 4. 7. 게재확정일 2022. 4. 7.]